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2017. 5. 18. 조례 제2816호
일부개정 2020. 11. 13. 조례 제3259호(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2. 6. 27. 조례 제3424호(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 10. 20. 조례 제3434호(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5. 5. 16. 조례 제3751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대학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편의 증진과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6.>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관협력”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호혜적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삭제 <2025. 5. 16.>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관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4조(대학의 책무) 학관협력을 추진하는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이 공동의 책무를 인식하고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5조(학관협력의 범위) ① 학관협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진단, 통계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안양학 연구 및 확산·보급·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체육 등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학관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학관협의회 및 학관협력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학관협력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6조(학관협의회)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양시 학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시 소재 대학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③ 시 소재 대학의 대표 중 1명은 협의회에서 선출하여 공동회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선출직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6.]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공동회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공동회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5. 16.]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② 실무협의회는 시의 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과 시 소재 대학의 협의회 업무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16.>

③ 시장은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학관협력 관련 업무담당부서장, 출연기관의 부서장 등을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협의 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25. 5. 16.>

[총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5. 16.]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학관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 설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제11조 삭제 <2025. 5. 16.>

제12조 삭제 <2025. 5. 16.>

제13조 삭제 <2025. 5. 16.>

제14조 삭제 <2025. 5. 16.>

제15조 삭제 <2025. 5. 16.>

제16조 삭제 <2025. 5.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7. 조례 제3424호,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양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5. 16. 조례 제3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